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월 23일

○ 회부일자 : 2002년 1월 23일

3.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9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 중 건설업자 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과, 공동시설세의 납기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건설업자 면허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 삭제

-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신규등록시 매 1건당 115천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 지방세법에서 납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조정

- 재산세의 납기가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함.(제60조)
 -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1. 12. 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규면허 등록시 납부하던 등록세의 납부규정을 삭제하고(지방세법 제149조 삭제),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집중되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개정됨(지방세법 제189조)에 따라,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